제31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제2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 5, 2,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 안 자 : 최호정 의원 외 42명 공동발의

나. 제 안 일 : 2023. 3. 29.

다. 회 부 일 : 2023. 4. 3.

라. 의안번호 : 61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 중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항목을 명확화· 현실화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 중 기관방문 기준을 평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 문으로 함(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개정안은 휴일 현지 기관방문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의회의원의 공무국 외활동 심사기준 중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해 1일"을 "평일"로 변경하여 심사기준을 현실화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발의되었음.

2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

-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 행사 참여, 상호 결연도시 방문 및 초청,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등 의원이 공무국외활동을 함에 있어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로써 정하고 있음.
- 조례에 따르면 공무국외활동 출장 전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장을 마친 후에는 이에 대한 공무국외활동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함.
- 이때 심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서 내실있는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출장제도 운영을 위해 마련한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에 따라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국외활동 목적과 방문 국가·기관의 적절성, ▶국외활동 인원 수와 구성의 적합성, ▶국외활동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국외활동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공무국외활동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의 활용 정도 등의 항목을 별표 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17개)을 적용해 심사함.

[별표 1] 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

항목	심사기준	예	야모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1. 공무국외활동 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		
	2.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 및 인터넷 등		
	공무국외활동 이외 수단으로 해당 업무수행 및 자료수집이 가능한가?		
	3. 방문국의 사회, 문화, 관습 및, 감염병 발생, 활동자 신변		
	안전 등 현지 사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4.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해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그이치도	방문하며, 국외활동 중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국외활동 목적과 국외 활동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1. 업무 즉식 구행에 필요한 독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3년간 방문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공무국외활동		
	여부 및 향후 다른 활동자가 동일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국외활동	1. 국외활동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활동자 선정이		
인원수와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활동에		
국외활동	조한되었는가?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3. 국외활동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활동자 간		
一 1 日 7 0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1. 국외활동 목적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책정했는지?		
국외활동 기간과 경비의	2. 공무국외활동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적정성	3. 타 기관으로부터 활동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국외활동 관계	1.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기관과의	2. 숙박, 통역, 교통수단 등 공무국외활동 수행에 필요한		
사전협의 여부	제반사항에 대하여 방문기관과 협의하여 확보하였는가?		
국외활동	(비교시찰의 경우) 방문국과 방문기관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는가?(미개최 시 사전		
준비의 내실성	전급의 또는 세리의를 계획이었는가(리계의 시 시선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제출)		
공무국외활동	1. 기관 방문, 현지회의 등 공무국외활동 내용을 활동		
보고서의	목적에 맞게 작성하며, 증빙자료 확보에 관한 계획이		
충실성 및	있는가?		
방문결과의 활용성	2. 공무국외활동 결과 및 노하우를 활용 및 공유할		
돌광생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		

3 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의 현실화(안 별표 심사기준란)

○ 개정안은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별표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항목의 심사기준란 중 제4호의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해 1일"을 "평일"로 개정하려는 것임.

<표-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제7조 관련) 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제7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 니 오	항목	심사기준	예	아 니 오	
기본계 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1. ~ 3. (생 략) 4. <u>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해 1일</u> 최소 1개기관 이상 방문하며, 국외활동 중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기본계 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1. ~ 3. (현행과 같음) 4. <u>평일</u>			

- 별표는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내용을 알기 쉽도록 표시하는 수단으로, 별표가 하나뿐일 때에는 "[별표]"로 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별표가 하나인 현행 조례의 별표 표시 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임.
- 또한,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해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국가별 휴일에 따라 각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사위원회에서도 관련 규정의 효과가 없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형해화(形骸化)되어 있는 규정임.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도 방문 국가의 공휴일과 주말에 기관방문을 제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행위로 보고 있고,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도 1일 1기관 방문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1)에서 현실을 반영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함.

¹⁾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지방의회운영팀 구두답변(2023.3.30.)

- 다만,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연수와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 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있고, '해외출장시 휴일엔 당당하게 사비로 관광'을 검토한다는 의회 관련 언론보도 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휴일일지라도 출장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계획을 세워 관광성·
 외유성을 지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내실있는 공무국외활동 운영으로
 의회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임.

4 종합 의견

- 개정안은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해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도록 한 규정을 현 실정에 맞게 "평일"로 변경하여 공무 국외활동의 내실과 실천을 제고하기 위함임.
- 다만, 서울시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지침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시·도의회 의원 국외출장 권고안'에서도 공무수행이 어려운 공휴일, 휴가철 등의 기간은 제외하고, 1일 2개 기관 이상 방문 일정을 원칙으로 출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무국외활동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붙임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및 권고사항

1. 안내배경

-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 등으로 국외 연수제도에 대한 비판 제기
-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 필요

2.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 주요내용

□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

- 심사위원회 정수를 시·도 의회는 9인 이상, 시·군·구 의회는 7인 이상으로 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2.8 이상으로 함
-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교육계·법조계·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의회의장이 위촉
- 심사위원인 지방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
-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심사위원회 주요 심사기능

-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
-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붙임) 작성
- **공무국외출장을 제한** 규정
 - 회기중,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출장 제한 가능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
 - *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외여비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 정보공개 관련

○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공개**하도록 규정

□ 사후관리 강화

- 지방의원이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
-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
 - 결과보고서 작성 시 계획대로 일정을 진행한 증빙자료 첨부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 구체적인 환수금액 및 환수기한 등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4. 별도 권고사항

-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경우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심사
-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지자체 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외출장은 심사대상에 포함하여 운영

참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 전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u>출장</u>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u>출장</u>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 6. 기타 지방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u>출장</u> 하는 경우
-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공 무국외<u>출장</u>은 당해 지방의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국외<u>출장</u>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소속 지방의회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시·도(○○시·군·구)의회의원공무국외<u>출장</u>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u>다만, 심사위원인지방의회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u>
 - ②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

-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시·도의회 9인(시·군·구 의회는 <u>7인</u>) <u>이상으로</u> 구성<u>하고 위원장은 민간위</u> 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 ④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⑤심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u>출장</u>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 ⑥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u>제</u> 4호의 공무국외<u>출장</u>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
-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회의)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또는 의사담당관 등)이 된다.
 - ③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군·구)위원회실비변 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지방의회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 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 ②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①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u>지방의회의</u> 원은 출국 <u>30일</u>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u>작성</u> 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지방의회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u>지방의회</u>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u>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u>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 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u>출장</u>보고 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 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 편성·집행) ①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제12조(사후관리 등) 허가권자는 공무국외<u>출장</u>을 마치고 귀국한 지 방의회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 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5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모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 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